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도로교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 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21. ~ 10. 31.)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운전면허증의 보관·과기 등)

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도로교통공단은 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유실물로 습득한 경우 분실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지체없이 과기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법 제86조에 따라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
3.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 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날, 제95조 제3항의 반환일 또는 유실물로 습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과기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과기대장에 기

록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를 “3년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한 차례만”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2호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삭제한다.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다만, 면허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교육용 자동차가 각각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67조제1항제2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삭제한다.

나.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제79조의2제2호 중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을 “상이등급”으로 한다.

별표 3 제18호의 면제대상자란 중 “가진 사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하고, 제19호의 면제대상자란 중 “가진

사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별표 5 제9호가목1) 중 “손해를 전액 보상”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따른 금액 이상을 보상”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2조의2(운전면허증의 보관·파기 등)</u> <u>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도로교통공단은 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유실물로 습득한 경우 분실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u> <u>②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u> <u>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u> <u>2. 법 제86조에 따라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u> <u>3.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u> <u>4. 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날, 제95조제3항의 반환일 또는 유실물로 습득한 날로부터 3년이</u>

	<u>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u> ③ <u>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파기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u>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u>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u>	② ----- ----- ----- ----- <u>3년의 범위</u>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u>한 차례만</u> 연기할 수 있다.	② ----- ----- ----- ----- <u>1년의 범위</u>에서 <u>한 차례만</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기능교육강사

가.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 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 당 3명 이상. 다만, 제1종 보통 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가 각각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나. 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다.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 등 10대당 1명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③ ~ ④ (생 략)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 (생 략)

1.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능교육강사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다만, 면허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교육용 자동차가 각각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 -----

라. -----

<삭 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능교육강사 가. (생 략) 나. <u>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u> 다. ~ 라. (생 략) 3. <u>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u>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79조의2(공단·의 부대사업) 제2호 가. ~ 다. (생 략)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u>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u> 판정을 받은 사람	2. 기능교육강사 가. (현행과 같음) 나. <u>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u> 다. ~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공단·의 부대사업) 제2호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u>상이등급</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